

고성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9
------	-----

제출연월일: 2000. 12. 21.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안 제3조, 제18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 나. 새차·현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 조정(안 제37조,)
- 다.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조정(안 제55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세정13400-11518(2000.11.6) 2000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준비
- 경상남도세정13430-11680(2000.12.8) 시군세 개정사항 통보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제2000 -397호(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본문 : 붙임참조.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21조제1항의 “120일”을 “4월”로 하고, “30일”을 “1월”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 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 \leq n \leq 12$)

제38조제1항중 “분할하여”를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 세액)을”로 하고, “4분의 1의 금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의3 본문중 “1000분의32”를 “1000분의115”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 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절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41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제42조중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업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5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범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 본문중 “농지세의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 본문중 “농지세”를 “농지소득세”로 한다.

제50조 제목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신고와 납부”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제목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1호가목의 “460원”을 “510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의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조사결정한다.”로 한다

제72조제2항 제6호의 “토지구획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경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의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2000.4.20 조례 제1644호) 제2항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대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u></p> <p><u>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u></p> <p><u>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u></p> <p><u>n : 차령(2 ≤ n ≤ 12)</u></p>
<p>2.~6.(생략)</p> <p>②(생략)</p>	<p>2.~6.(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p>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p>

현 행	개 정 안
<p>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납기표 생략)</p> <p>②~④(생 략)</p>	<p>(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p> <p>-----</p> <p>-----</p> <p>-----</p> <p>-----</p> <p>-----</p> <p>-----</p>
<p>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u>1,000분의 32</u>로 한다.</p> <p><신 설></p>	<p>(납기표 현행과 같음)</p> <p>②~④(현행과 같음)</p> <p>제40조의3(세율) ①-----</p> <p>-----1,000분의 115-----</p> <p>-----</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 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p>
<p>제4절 농지세</p> <p>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하 이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제4절 농업소득세</p> <p>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p> <p>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p> <p>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p>	<p>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p>	<p>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 농업소득세 ----- ----- ----- ----- 농업소득금액</p>

현 행	개 정 안
<p>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 ----- ----- -----.</p>
<p>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u>농지세</u>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 <u>농업소득세</u> ----- ----- ----- ----- ----- ----- ----- ----- ----- ----- ----- ----- ----- ----- ----- ----- -----.</p>
<p>제44조(과세기간) ①<u>농지세는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u></p> <p>②<u>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u></p>	<p>제44조(과세기간) ①<u>농업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u></p> <p>②<u>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 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지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p> <p>제45조(과세표준) ①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 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2이상의 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소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p>	<p>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 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p> <p>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u></p>
<신 설>	<p><u>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u></p>
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 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생략)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현행과 같음)
제47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u>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u> <u>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p> <p>2. 농지의 경작지가 변동된 때</p> <p>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u>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u></p> <p>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 <u>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u></p> <p>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 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 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 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8조(중간예납) ① 영 제162조의 규정 에서 “연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제1기분: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p> <p>2. 제2기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p> <p>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p>	

현 행	개 정 안
<p><u>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u></p> <p>제51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p> <p>① 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 농지조사위원회는 군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p> <p>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흡연용의 제조담배</p> <p>가. 제1종 퀼련 20개비당 <u>460원</u>.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퀼련은 20개비당 40원</p> <p>나. ~라.(생략)</p> <p>② 생략</p>	<p>제55조(세율) ①-----</p> <p>1. -----</p> <p>가. ----- <u>510원</u> -----</p> <p>-----</p> <p>나. ~라.(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p> <p>② (생략)</p>	<p>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조사결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72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1.~5.(생 략)</p> <p>6. <u>토지구획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u></p>	<p>제72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5.(현행과 같음) <p>6. <u>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u>----- ----- ----- ----- ----- ----- ----- -----.</p> </p>
<p>제73조(과세표준) ①생략.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u>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u>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p>	<p>제73조(과세표준) ①현행과 같음. ②----- ----- ----- <u>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u> ----- -----.</p>

